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대리 수령 후 본인 전달 방식 명확화〉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22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 6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6조제5항), ②대리 수령인 선정 시 동의 절차를 규정하며(안 제6조제6항), ③병역의무부과 대상자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고용주 등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게 전달할 시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통지서 전달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 ④ (생략)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전단에 규정된 사람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 (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으로 본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⑥ · ⑦ (생략)</u> <u>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u> <u>⑨ (생략)</u>	<u>⑥ 병역의무자가 제5항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u> <u>⑦ 제5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u> <u>⑧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제5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u> <u>⑨ · ⑩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u> <u>⑪ 제10항</u>----- ----- ----- ----- -----. <u>⑫ (현행 제9항과 같음)</u>

□ 현행법 상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 고용주 등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처벌¹⁾하고 있음.

□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미이행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달 방식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면하여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달 시 대리 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행위가 적법한 전달 방식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 원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병역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 판시²⁾하였고, 법무부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등을 메시지·사진 등으로 전달받고도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 현행 「병역법」상 처벌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통지서 원본을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없도록

1)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함이 원칙이고(병역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현역입영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령상 사유가 없는 한 병역의무자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책상 등에 일시 현역입영통지서를 둔 것만으로는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한 바 있음³⁾.

□ 이에 개정안은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통지서 전달 행위 방식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적법하게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한편, 안 제6조제6항에서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대리 수령인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수령에 대한 동의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⁴⁾

안 제6조제5항에서 ‘세대주’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고용주를 ‘본인의 고용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개정 사항 또한 법 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보임.⁵⁾

3) 법무부 법 개정 건의(2019년)와 관련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비군법」 제6조의2제4항을 개정(2021년)한 바 있음.

4) 참고 유사입법례 : 「예비군법」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③ 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참고 유사입법례 : 「예비군법」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 병역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유사 입법례 비교표>

구분	현 행	개 정 안	예비군법
대리수령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
대리수령인 선정절차	없음	통지서 전달 전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
본인 전달방법	구체적 방법 없음	·직접 전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직접 전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문 의 처

02)6788-5307